

대전지방법원 2021. 12. 14 선고 2020가단555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채규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상호

변 론 종 결 2021. 11. 16.

판 결 선 고 2021. 12. 1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0,519,2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1. 2.경 피고로부터 월 2%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7,000,000원을 차용하였고, 2012. 8. 16.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도로 434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등 1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8,225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. 원고가 2020. 2. 25. 당시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위 대여원리금 85,320,000원에 불과함에도, 피고는 2020. 2. 25. 이 사건 토지의 경매사건 배당에 참가하여 135,839,280원을 배당받았으므로, 원고에게 위 85,320,000원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50,519,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2. 판단

갑 1,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20. 2. 25. 당시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85,320,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오히려 을 1,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원고는 2011. 5. 2.경 피고와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9,000만원을 갚기로 하고 피고에게 9,000만원을 변제기 2011. 6. 30., 이자 연 30%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, 2012. 8. 16. 이와 같은 채무변제계약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으며,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,25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원금 9,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1. 5. 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%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.

결국,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배당절차에서 135,839,280원을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, 위 돈은 대여금 9,000만원에 대한 2011. 5. 2.부터 위 배당일인 2020. 2. 25.까지 3222일간 연 30%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38,339,726원(원 미만 버림)에도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, 피고가 위와 같이 배당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오명희